

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등 통합 지도·점검 실시

- 대기·수질·폐기물 등 매체별 단속을 사업장 중심으로 통합실시
-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단속시 민간단체 및 전문가 참여 확대

〈 편집부 〉

환경부는 그동안 하나의 사업장내에 여러개의 배출 시설이 있는 경우, 대기, 수질, 폐기물, 유독물질 등 에 대한 지도·점검을 환경오염 매체별로 따로따로 여러차례에 걸쳐 단속해 왔으나, 앞으로는 하나의 사 업장에 단속을 나갈 경우 여러가지 배출시설 들을 한꺼번에 점검토록 하는 『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등에관 한통합지도·점검규정』을 제정하여 시행(환경부 훈령 제 호, '02.10.14)한다.

지금까지는 환경단속 공무원들이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번 출입함에 따라 업소에 불편을 초래한 측면이 있었으나,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게 되고 아 울러 배출업소의 환경오염문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 고 근본적인 정밀점검이 가능하게 되었다.

- 「통합지도·점검규정」이 시행되면, 정기점검을 위한 사업장 출입횟수가 크게 줄어들고(6~10 회/년평균 ⇒ 3~4/년평균), 사업장내의 모든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정밀점검이 가능하게 되어 단속의 효율성과 강 도가 한층 높아지게 된다.

• 아울러 통합지도점검규정은,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단속시 민간단체 및 전문가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,

- 또한 4대강유역 환경감시대의 특별단속업무 수 행 범위를 확대하여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단속 뿐만아니라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, 환경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업장 등에 대 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들을 정 하고 있다.

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등에관한통합지도·점검규정안

□ 주요내용

- 대기, 소음·진동, 악취, 폐수, 오수·분뇨 및 축산 폐수, 폐기물, 유해화학물질등 모든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함(제2조)
- 관계공무원이 업소를 지도·점검할 때에는 당해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대기, 폐수, 유해화학물 질, 폐기물 등 환경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2 개이상의 여러 배출시설을 통합하여 지도·점검 토록함(제6조)
 - 다만, 민원·환경오염사고·광역감시활동 등 통합 지도·점검이 곤란한 경우는 예외
- 지속적인 민원유발, 다수인 민원 발생사업장 등에 대한 문제해결과 효율적인 지도·점검을 위하여 민간단체,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함 (제4조)
- 대기, 폐수, 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, 폐기물, 유 독물 등 매체별에 따라 각각 청·녹·적 또는 중 점·일반 등으로 복잡하게 관리해오던 등급체제 를 청·녹·적 3등급으로 통일함(제5조)
- 점검기관은 연간 통합지도·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토록함(제8 조)
-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 지도·점검관련 교육을 실시함(제9조)
- 여러기관이 한 사업장을 동시에 지도·점검할 경 우, 환경부(소속기관 포함) 또는 상급기관이 관련

- 사항을 총괄·지휘하여 합동으로 지도·점검을 실시함(제10조)
- 「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」에 의한 협의기준초과부담금 부과대상시설에 대한 지도·점검을 실시함(제13조)
- 환경부장관은 각 기관의 점검결과를 종합·평가하고, 처분의 주요내용을 인터넷 또는 언론매체 등에 공개토록함(제15조)
- 시·도지사는 배출업소 지도·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을 유역환경청장을 경유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토록함(제19조)
- 환경감시대의 특별단속업무 수행범위 기준을 설정함(별표1)
 -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지도·점검
 - ▷ 상수원보호구역, 수변구역, 특별대책지역 1·2권역, 상수원상류지역
 -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오염방지를 위한 특별지도·점검

- ▷ 환경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지역, 환경오염 관련 다수인 민원 발생지역, 오염도가 크게 상승되어 자동측정망(TMS)운영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지역
- 환경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에 대한 특별지도·점검
 - ▷ 2년에 3회이상 위반사업장, 2년간 지도·점검을 실시한 사실이 없는 사업장,
- ※ 다른 훈령(예규)의 폐지 및 개정
 -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지도·점검에관한규정,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관련시설지도·점검규정, 폐기물관련사업장지도·점검규정 폐지
 - ▷ 유독물영업자등의관리업무에관한규정 개정 ("제3장 지도점검" 삭제)

▶ 「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등에관한통합지도·점검규정안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(<http://www.epacr.kr>) → 환경자료실 → 종합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.

산업환경 네트워크 안내

대한상공회의소는 재생이 가능한 산업부산물을 수요·공급업자들이 사이버공간에서 원활한 정보교환을 통해 산업부산물을 손쉽게 거래함으로써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고, 기업들이 각종 환경경영정보를 인터넷상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'대한상의 산업환경 네트워크(<http://env.korcham.net>)'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동 사이트는 산업부산물 배출업체 또는 수요업체 쌍방이 언제든지 재생이 가능한 산업부산물의 배출과 수요정보를 입력하여 시장원리에 따라 적절한 거래상대를 찾을 수 있으며, 산업부산물 처리·재생업체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어 산업부산물 처리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.

또한 환경경영정보를 통해서 환경친화경영, 국제환경동향, 국내환경정책, 지역환경개선, 환경일반 등 각 부문별로 데이터베이스(DB)화한 각종 환경관련 자료를 열람 및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.

대한상의 산업환경 네트워크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소개합니다.

사이트명	대한상의 산업환경 네트워크
도메인명	http://env.korcham.net
주요정보	산업부산물교환정보, 처리/재활용처리업체 리스트, 환경경영정보, 기업환경건의센터, 주간 '대한상의 산업환경 다이제스트'
주요특징	등록비·연회비·거래수수료가 전혀 없는 무료정보사이트

※ 동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대한상의 산업환경팀(TEL : 02-316-3485, FAX : 02-775-2919, E-mail : daisy@korcham.net, 담당자 : 이상은)으로 연락하여 시스템 안내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